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倫 理 規 定

2002. 5

社團法人 컴퓨터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

1. 通則

(1) 본 규정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는, 이로 인해 표현행위에 대해서 억제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다.

(2) 본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표현은 그것만 발췌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 중에서 판단한다.

(3) 표현은 항상 사회적인 가치관 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 규정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는 그런 사정이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4) 판매 방법 및 선전 방법 변화 등, 본 규정이 작성된 당시와는 다른 환경에서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는 걸로 한다.

(5) 본 규정에 의거하여 언뜻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도, 그런 표현물이 갖는 대항적 가치관 및 예술성을 비교・고려한 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걸로 한다.

(6) 본 규정은 Command 및 비공식적인 기술에 의한 표현, 타이틀, 동곤된 인쇄물, 팩키지, 광고, 판촉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7)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이라도 두드러지게 사회통념에 반하면 CESA윤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규정에 준한 처우을 할 수 있다.

(8) CESA倫 심사를 거쳐서 윤리규정 제 6조의「B」구분의 지정을 받은 작품에 관해서는, 유저들이 구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CESA倫이 지정하는「注意喚起 마크」를 팩키지 지정 위치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2. 基本理念

(1) 모든 인종・민족・ 풍속・습관・종교・국민 감정을 존중한다.

(2) 민주주의 정신에 反하는 사상은 부정하고, 군국주의・전쟁 등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3)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특정 개인 및 단체 권리,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4) 헌법・법률 그 외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이들에 반하는 행위 표현은 신중을 기해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差別的인 表現 및 名譽 毁損的 表現

(1) 평등주의 정신을 존중하고, 인권・신조・성별・직업・종교・형편・心身적 조건・생활 형편 등에 의해 차별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2) 노인・유아・신체 장애자・정신 장애자 등 사회적으로 弱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표현은 억제한다.

(3) 개인・단체 및 단체의 명예・존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

4. 敎育에 關聯된 表現

(1) 인격 형성 중에 있는 청소년, 풍부한 정조(情操)와 건전한 정신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교육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표현은 신중히 하고, 음주・끽연 등 법률 상 미성년자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 및 그 외 비행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는다.

5. 性的 表現

(1) 성행위・성행위에 이르는 과정을 어떤 방법이라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

(2) 실사 및 애니메이션 표현에도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나체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3) 예를 들어, 속옷 등 착의 상태라도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4) 그 외 청소년에게 눈에 띄게 성적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6. 反社會的인 行爲, 暴力 및 犯罪에 대한 表現

이 항목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A」구분,「B」구분,「C」구분으로 분리해서 처리한다.

(1) 「A」구분 : 유저에 대한 注意喚起가 필요하지 않는 것

- o 살인, 상해, 폭력 등 범죄를 표현하고, 또 수법 및 방법을 시사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o 인간 또는 동물 등 肢體를 分離한 상태 및, 결손된 상태를 자극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 o 마약, 신나 등 규제 약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o 불륜, 불순 이성 교제, 매춘 등 불건전한 풍속업에 관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o 기타 폭력성, 잔학성을 내포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2) 「B」구분 : 유저에 대한 注意喚起가 필요한 것

- o 살인, 상해, 폭력 등 범죄 표현 및, 수법 및 방법을 시사하는 표현은 있지만, 범죄를 유발하거나 인격 형성을 방해한다 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
- o 인간 또는 동물 등 肢體를 分離한 상태 및, 결손된 상태의 표현은 있지만, 범죄를 유발하거나, 인격 형성을 방해한다 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
- o 마약, 신나 등 규제 약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표현은 있지만, 범죄를

유발하거나, 인격 형성을 방해한다 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

- o 불륜, 불순 이성 교제, 매춘 등 불건전한 풍속업에 관한 표현은 있지만, 범죄를 유발하거나, 인격 형성을 방해한다 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
- o 기타 폭력성, 잔학성을 내포한 표현은 있지만, 범죄를 유발하거나, 인격 형성을 방해한다 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

(3) 「C」 구분 : 발매를 금지할 것

- o 살인, 상해, 폭력 등 범죄 표현 및, 수법 및 방법을 시사하는 표현이 있으며, 범죄를 유발하거나 인격 형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것
- o 인간 또는 동물 등 肢體를 分離한 상태 및, 결손된 상태의 표현이 있으며, 범죄를 유발하거나 인격 형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것
- o 마약, 신나 등 규제 약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으며, 범죄를 유발하거나 인격 형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것
- o 불륜, 불순 이성 교제, 매춘 등 불건전한 풍속업에 관한 표현이 있으며, 범죄를 유발하거나 인격 형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것
- o 기타 폭력성, 잔학성을 내포한 표현이 있으며, 범죄를 유발하거나 인격 형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것